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267000 교도관의 외부진료 강요 및 부당처우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국군교도소장에게,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절차,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기회의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진정인은 같은 기관에서 교도관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20. 3. 23. 13:00경 진정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이번 징별 건을 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징별하겠다.”라고 하며 외부 진료를 강요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0. 3. 26.과 같은 달 30.에 진정인이 정신과 약 복용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일자불상경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질병의 사유가 있으면 징별조사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에게 “전문의가 진료 후 처방한 것이니 약을 먹어보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전화통화의 처우를 제한한 바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의 주장, 현장조사결과보고, 참고인의 진술, 진정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3. 15. 19:55부터 같은 달 16. 08:17까지 거실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닫고, 책과 책상 등을 바닥에 내던지는 행동을 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0. 3. 17. 18:40경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 중에 105호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 동료 수용자를 15초간 주먹과 팔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20. 3. 23. 13:00경 진정인과 정신과 진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 피진정인은 2020. 3. 26. 및 같은 달 30. 진정인에게 피진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권하였으나, 진정인은 복용하지 않았다.

마. 진정인은 2021년 3월말경 피진정인에게 전화사용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기관 교도대장 소령 △△△은 교도소장 중령 ◇◇◇의 승인을 받아 진정인의 전화사용 신청을 불허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가항(외부진료 강요) 관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

행법'이라 한다) 제96조(징별대상자의 조사)는 징별대상자의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조사기간) 제3항은 “징별대상 행위가 징별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별절차에 우선하여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5조(조사의 일시정지)는 “징별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징별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질병의 사유가 있으면 징별조사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하여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 진정인이 수차례 정신과적 증상을 직접 호소하여 실제로 수차례 외부진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외부진료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처방약 복용 강요) 관련

진정인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며, 진정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가운데, 그 외 달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처방약 복용을 강요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전화통화 처우 제한)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진

정인의 전화통화 처우 제한은 교도대장 소령 △△△이 건의하고 교도소장 중령 ◇◇◇이 승인하여 이루어졌는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군형집행법 제45조(전화통화) 제1항은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등에 해당하면 전화통화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제3항은 “징벌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하면 전화통화 등의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가는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는 점, 진정인은 자신의 거실로 입실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취침시간에 집기류를 수차례 내던지고 동료 수용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점, 위 폭행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화통화를 위해 이동시 또는 전화사용시 타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기관에서 진정인의 전화통화 처우를 제한한 것에 별다른 절차의 위반 또는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나. 의견표명

본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민간 교정시설과 달리 군교도소의 경우 징벌대상행위의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

집절차,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기회의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의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진정은 부당한 처우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하더라도, 향후 징벌조사과정에서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군교정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형집행법 제93조(징벌) 이하에서 징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에서는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징벌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징벌대상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군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처우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이하에서는 징벌 대상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며,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조사 완료 후 징벌 의결과정에서 징벌의결서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진술조서 등 수용자 조사기록의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실제로 본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징벌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징벌의결서에 적시된 것 이외에는, 징벌조사기록, 징벌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처우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 등을 찾아볼 수 없었고, 피진정기관에서 진정인에게 조사의 이유 및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입

증할 자료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비교하여 민간 교정시설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 훈령 제1211호) 제221조(조사 근무자 유의 사항)에서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수용자 조사부(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시 규율위반 현장의 촬영 또는 녹음, 해당 수용자 및 참고인의 자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할 것, 해당 수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 등을 유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222조(징벌대상자 조사 시 유의 사항)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에 따라 징벌대상자의 처우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기재하여 소장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24조(징벌집행부 등의 정리)에서는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은 수용자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 보안과장의 결재를 받고 이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6조는 수용자를 수용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체계적인 서류 관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전자식 기록이나 서명을 표기한 페이지로 이루어진 등록부를 활용하며, 기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무단 열람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¹⁾, 제8조는 구금기간 중 필요

1)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Nelson Mandela Rules)

Prisoner file management

Rule 6 ‘There shall be a standardized prisoner file management system in every place where persons are imprisoned. Such a system may be an electronic data base of records or a registration book with numbered and

시 수용자 태도와 규율 준수 여부에 관한 정보 및 규율적 처벌내역에 관한 정보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이러한 법무부 훈령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제 규정들은 수용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징별조사 및 의결이 객관적 증거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징별조사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별조사에 수반된 불이익 처분의 일시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에 있을 수 있는 당사자의 불복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군 교정시설의 징별조사 및 처우제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원리가 지배되고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징별대상행위의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및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절차,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기회의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의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별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표명한다.

signed pages. Procedures shall be in place to ensure a secure audit trail and to prevent unauthorized access to or modification of an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ystem.

2)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Nelson Mandela Rules)

Rule 8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be entered in the prisoner file management system in the course of imprisonment, where applicable:

- (c) Information related to behaviour and discipline;
- (e) Information on the imposition of disciplinary sanctions;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하되, 군교정시설 징병대상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김 수 정